

1993. 11.

光州直轄市西區民의 날에 관한條例制定案

審 查 報 告 書

總 務 委 員 會

光州直轄市西區民의 날에 관한 條例制定案
審 查 報 告 書

1993年 11月

總 務 委 員 會

1.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 : 1993年 9月 24日

나. 提出者 : 光州直轄市 西區廳長

다. 回附日字 : 1993年 10月 4日 (總務委員會)

라. 上程日字 { 1993年 11月 2日 第27回(閉會中) 第1次 總務委員會
 第28回 光州直轄市西區議會(臨時會)

마. 開催回數 및 日數 : 1回 (93年 11月 2日)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李元昌 文化公報室長)

가. 提案理由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여 전구민의 참여속에
화합과 단결을 결속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서구를
건설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본문 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자치구로 된 날을 구민의 날로 정한다. (제2조)
 - 구민의날 행사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라 정한다. (제3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丁浩文)

-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 운영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 본조례는 제정시키기 위하여 입법예고 및 관내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던바 84.5%가 구민의날 지정을 찬성하고 있으며, 또한 광주 직할시의 북구, 광산구도 기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서구청에서도 본조례안과 같이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答 辯
(質問者 : 李正朱 議員)	(答辯者 : 文化公報室長 李元昌)
○ 설문조사 대상자는	○ 주민, 공무원, 직능단체등 2,000명
(質問者 : 潘正煥 議員)	
○ 구민의날 지정에 따른 예산과 행사 계획은	○ 행사계획은 별도로 수립보고하겠으며 예산은 지침상 2천만원 정도입니다.

5. 討論要旨

반정환 의원 : 제2조의 구민의날 자구정리 의견 (심사보고요지 참조)

6. 委員會 審査報告要旨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광주직할시서구민의날에관한조례제정안 제2조 (구민의날) 자치구로된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한다를 자치구로된 자구을 삭제하고 5월 1일을 구민의날로 지정한다로 자구를 정리키로 합의하였음 (별첨 자구정리 수정안 참조)

7. 修正案의 要旨

본조례 제2조 (구민의날)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한다. (별지참조)

8. 審査結果 : 수정안 가결

9. 少數意見要旨 : 없음

광주직할시서구민의회날에관한조례제정안중수정조례안

제안년월일 : 1993년11월 일

제안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본조례안중 구민의회날을 자치구로된 5월 1일을 구민의회날로 정한다. (제2조) 본 문안의 조항은 구민의회날이 언제인가를 정하는 문안일뿐 구민의회날을 지정하게된 배경과 동기를 설명코자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자치구로된 5월1일을 구민의회날로 지정한다를 자치구로된 자구를 삭제하고 5월 1일을 구민의회날로 지정한다로 자구정리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제 정 요 구 안	수 정 안
제1조 (목적) 생략	제1조 (목적) 생략
제2조 (구민의회날) <u>자치구로된</u> 5월1일을 구민의회날로 정한다.	제2조 (구민의회날) 5월 1일을 구민의회날로 정한다.
제3조 (시행규칙) 생략	제3조 (시행규칙) 생략
부칙 (생략)	부칙 (생략)

신 · 구조문대비표

광주직할시서구민의회날에관한조례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목적) 생략 제2조 (구민의회날) 자치구로된 5월1일을 구민의회날로 정한다. 제3조 (시행규칙) 생략 부 칙 (생략)	제1조 (목적) 생략 제2조 (구민의회날) 5월1일을 구민의회날로 정한다. 제3조 (시행규칙) 생략 부 칙 (생략)